

『지위승계 특약의 확인』 신청 가이드 라인

1 관련법령

- 「공공주택특별법」 개정·시행('25.08.01)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구내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,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 체결 및 공공주택 사업자의 확인 의무화

< 관련 법령 >

[공공주택특별법]

제40조의10(토지등의 수용 등)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복합지구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
다.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. 다만,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.

* (효력발생시기) '25.8.1~

1) (허용요건) 무주택자* 취득에 한정

공특법 제40조의10(토지등의 수용 등)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
가.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* (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)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

나. 해당 토지등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

다.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. 다만,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.

2) (허용조건)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※ ①,②,③,④,⑤ 모두 충족

①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*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등 취득

- 해당 지구내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
- 현물보상기준공고일 이후 결혼·이혼·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
- 현물보상기준공고일부터 현물보상계약체결 후 현물보상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무주택인 자(현물보상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)

*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5

- ② 지위승계기간 제한 : 후보지선정일 이후 ~ 사업계획승인후 6개월까지
- ③ 해당 토지등 관련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(동일세대원 포함)
- ④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 1회에 한해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
- ⑤ [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
+ (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)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]

3) (허용시점) 공특법 개정 시행일(' 25.8.1)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터 적용하나, 시행일(' 25.8.1) 이전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지정 고시일 이후 거래부터 허용

부칙 <법률 제20754호, 2025.1.31.> 제4조(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)

- ①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4) (지위승계기간) 후보지선정일 ~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까지

공특법 제35조의9(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)

-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<신설 2025. 7. 31.>
1.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
 2.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

□ 후보지 선정일* 이후의 거래에도 일정조건에 부합할 시 현물보상 제공

* 부칙 제4조 각 항에서 정하는 적용 시점

2 특약 확인 및 업무절차

□ 특약 확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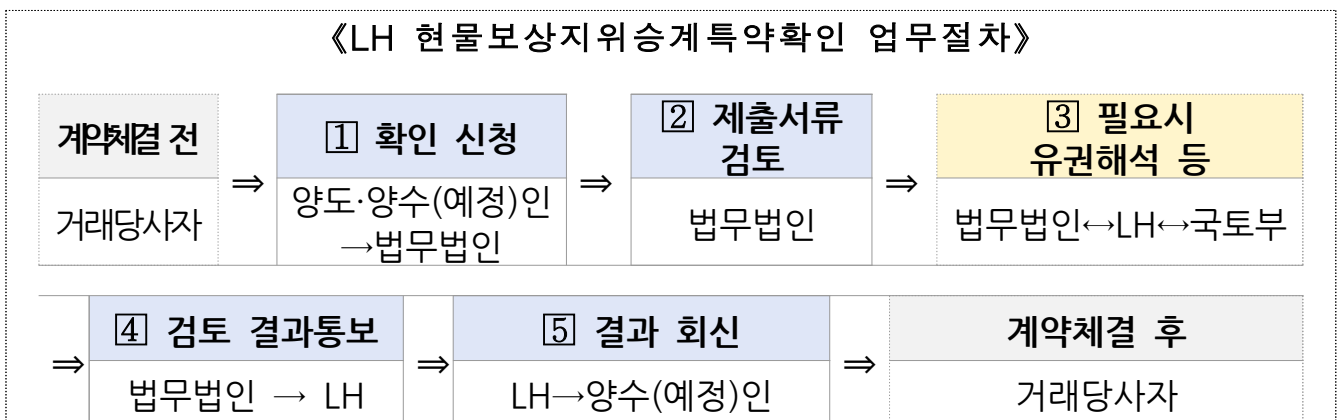
① ~ ⑨ 모두 적격일시 LH(공공주택사업자)로부터 “확인”, “확인불가”, “승계불가”로 특약확인서 공문시행

구분	확인항목		확인할 내용	LH확인
기초사실	❶ 복합지구내 토지등		지구내 편입된 토지등이 맞는지	적격
	❷ 확인신청자		- 양도인이 토지등 소유자인지 - 양수(예정)인이 신청하였는지	적격
허용요건 부합여부	❸ 거래기간		지위승계기간내*(사업지구별 상이) 소유권 이전인지	적격
	❹ 거래횟수		1회 거래(중여,매매)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	적격
	❺ 거래유형		매매 또는 중여 거래인지	적격
	대상자	❹ 소유자 수	현물보상대상자가 증가하지 않는지	모두적격
	수유지	❺ 동일 세대원	복합지구내 소유한 토지등이 있는지	
	❽ 계약서내 특약여부		양도인, 양수(예정)인이 지위 승계 특약 확인을 하였는지	적격
보상요건 부합여부	❹ 보상 요건	주택	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	적격
		토지	면적기준(수도권 90m ² 이상)에 맞는지	적격
		주택외 건축물	현물보상공고(사업지구별 상이) 기준에 따라 상이	

* 불 입 : 사업지구별 지위승계 기간 참고

- (적용대상) 해당 사업지구 내 후보지선정일 이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거래(매매, 중여)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
□ 특약확인 업무절차



- ① (확인신청) 양도·양수(예정)인이 거래한 부동산거래계약서(중여 계약서 포함) 특약사항에 지위승계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, 지위승계 특약확인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사전 작성 후 법무법인(신세기)로 예약 방문하여 접수

* [붙임 2], [별첨]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관련 제출 서류

- ② (제출서류 검토) 법무법인(신세기) 전담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, LH 지위승계확인 담당자에게 검토결과 통보

*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,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완 필수

* 기간 내 미보완 등으로 확인이 중단된 건은 서류 구비 후 재접수 필요

- ③ (최종 검토) LH 지위승계확인 담당자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, 관련 법령의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질의·회신 하여 검토

- ④ (결과회신) 공공주택사업자(LH)는 최종 검토 및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특약확인서(확인 or 확인불가 or 승계불가)를 신청 시 기재한 회신 요청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

- ⑤ (결과회신 후) 특약확인서는 지위승계 가능여부 확인에 불과하며, 현물보상 가능 여부는 추후 「현물보상기준 및 현물보상 신청공고」에 따라 추가 요건 등을 심사 후 결정

신청 관련 안내

접 수 처	신청접수			비 고
	방문일시	장소	연락처	
법무법인 (신세기)	평일 10:00~16:00 (단, 12:00~13:00 제외)	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4 5층	1600-4690	※ 방문 전 필수 사항 · 방문 일자 예약 · 서류사전작성및날인

□ 찾아오시는길

- 종합운동장역(2호선, 9호선) 9번 출구에서 도보 10분
- 삼전역(9호선) 4번 출구에서 도보 11분

□ 참고 사항

- 현장 신청접수는 10:00 ~ 16:00(단, 12:00 ~ 13:00 제외)에 진행되며,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을 예방하고자 예약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방문 전 우선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약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법무법인은 [붙임 1]의 사업지구 외 특약확인 신청 건은 신청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양도·양수(예정)자는 본인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해당하는 사업지구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 및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 제출서류(신청서, 약정서 등)의 경우, 방문 전 작성을 하신 뒤 사전날인하거나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단, 대리인 신청 시 방문 현장에서의 서류 수정 및 추가 날인(서명) 불가
- 모든 서류는 제출일(방문접수일)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- 거래당사자가 미성년자, 해외체류자 등인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, 해당서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 유의 사항

-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신청시 제출된 서류를 통한 지위승계 가능여부 확인에 불과하며, 현물보상 가능 여부는 추후 「현물보상기준 및 현물보상 신청공고」에 따라 추가 요건 등을 심사 후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,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효력이 없으며,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 이후 추후 현물보상대상자 선정 심사 시, 확인받은 외의 사항(무주택자 요건 등)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-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자료가 위조·변조 등으로 부적법하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

□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법무법인은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15일 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이 중단된 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
* 단,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, 위임장 미비 건은 접수 불가

□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그 확인 당시 시점의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,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 후 변동이 발생하여 현물보상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,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

사업지구별 거래 기간

구 분	지 역	지 구 명	지 구 현 황	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(권리산정기준일)	지위승계기간 (거래가능기간)
1	서울 은평구	수색14구역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2		불광1 근린공원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 (추가편입 `24.5.16)	'25.8.1. ~
3		불광2 329-32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'21.6.29.	'25.11.28~
4		녹번동 근린공원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5		녹번역 인근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6	서울 서대문구	고은산 서측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7	서울 중구	약수역 인근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8.4. (추가편입 `24.5.16)	'25.8.1. ~
8	서울 성북구	장위12구역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8.4. (추가편입 `24.10.10)	'25.8.1. ~
9	서울 강북구	수유12구역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 (추가편입 `24.10.10)	'25.8.1. ~
10		미아16구역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11		송중동 주민센터 인근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12	서울 도봉구	창2동주민센터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'21.6.29.	'25.10.31. ~
13	서울 노원구	수락산역 인근	후보지 ('25.8.1.기준)	'22.1.27.	'25.8.1. ~
14	서울 중랑구	용마터널 인근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 '26.6.26.
15		상봉터미널 인근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 (추가편입 `24.12.19)	'25.8.1. ~
16		사가정역 인근	지구지정 ('25.8.1.기준)	'21.6.29.	'25.8.1. ~
17		용마산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'21.6.29.	'25.10.31. ~
18		상봉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'22.1.27. (추가편입 `25.02.27)	'25.08.01 ~
19	서울 광진구	중곡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'22.1.27.	거래불가

구분	지역	지구명	지구현황	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(권리산정기준일)	지위승계기간 (거래가능기간)
20	서울 강서구	화곡동 주민센터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2.12.26.	‘25.8.1. ~
21	서울 양천구	목4동 강서교 인근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2.12.26.	‘25.8.1. ~
22		목동역 인근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2.12.26.	‘25.8.1. ~
23	서울 구로구	대림역 인근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2.1.27.	‘25.8.1. ~
24	서울 영등포구	신길15구역	지구지정 (‘25.8.1.기준)	‘21.6.29.	‘25.8.1. ~
25		영등포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‘21.6.29.	‘25.12.26 ~
26		신길4구역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‘21.6.29.	‘25.8.1. ~
27	서울 용산구	효창공원앞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‘22.1.27.	거래불가
28	서울 강동구	고덕역 인근	예정지구 (지구지정일)	‘22.1.27.	‘25.8.1. ~
29	인천	동암역 남측	지구지정 (‘25.8.1.기준)	‘21.6.29.	‘25.8.1. ~
30	부천	중동역 서측	지구지정 (‘25.8.1.기준)	‘21.6.29.	‘25.8.1. ~
31		중동역 동측	지구지정 (‘25.8.1.기준)	‘21.6.29.	‘25.8.1. ~
32		송내역 남측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1.6.29.	‘25.8.1. ~
33		송내역 남측2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1.10.28.	‘25.8.1. ~
34		원마공원 인근	후보지 (‘25.8.1.기준)	‘21.10.28.	‘25.8.1. ~
35	성남	성남금광2	지구지정 (‘25.8.1.기준)	‘21.10.28. (추가편입 `23.07.10)	‘25.8.1. ~
※ 기타사항 - 용마터널 인근 현물보상 지위승계가능기간 ‘26.6.26.일자로 종료 예정 - 중곡역인근, 효창공원앞역 인근 예정지구는 현재 거래불가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불가					

붙임 2

□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리스트

아래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적 거래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확인항목		확인결과	비고
① 복합지구내 토지등 해당 여부	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-
② 확인신청자	양도인이 소유자임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모두 만족
	양도·양수인이 신청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③ 거래기간 준수 여부	지위승계기간 내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-
④ 1회 거래(기준일 이전 토지등소유자와 거래)*	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-
⑤ 거래내용	소유권 거래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모두 만족
	증여, 매매 등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⑥ 대상자수 유지	① 단독소유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어느 하나 만족
	② 다수공유(1개 주택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③ 다수공유(1개 토지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④ 다수공유(다수 주택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⑤ 다수공유(다수 토지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⑥ 다수공유(주택+토지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⑦ 동일 세대원**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		동일 세대원 명단 김○○, 이○○ 총 0인 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-
⑧ 부동산 매매계약서(또는 증여계약서)내 특약 여부 (표준특약서 활용가능)	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-
⑨ 보상요건 충족 여부	① 주택(다가구특례 주택 포함)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어느 하나 만족
	② 89.01.24. 무허가주택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③ 토지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	④ 기타 건축물	해당 ☐ 미해당 ☐ 확인불가능 ☐	

*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혼·상속 등으로 사유로 기준일 이후 취득한 양도인은 예외적 인정

** 동일 세대원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구내 소유한 토지등이 있는지 확인

□ **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관련 제출 서류(양도인 기준)**

제출서류		확인사항	발급처
신분증 사본(양도·양수인), 계약서(매매 또는 증여)사본		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 신청자의 거래 관련 기초사실	* 계약서 및 신분증 개별제출
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신청서		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의 기초사실	LH 홈페이지
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		지위승계 사실 및 일부지분 거래 후 잔여지분 현금보상 동의 여부	LH 홈페이지 * 개별 특약서 활용 가능
부동산 등기부등본 (말소사항 포함)		토지등 소유 및 거래 여부	전국 등기소 (인터넷 등기소 포함)
토지대장		기준 면적 이상 해당 여부	관할 관공서 (시·군·구청 및 주민센터)
건축물대장		해당 건물 용도 및 적법 여부 (다가구 특례 주택 여부 포함)	
무허가 건축물 대장 (해당 사항만 제출)		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여부 (1989. 1. 24 기준)	
부동산 소유시	부동산 소유 현황서	양도인 및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	전국 등기소 (인터넷 등기소 포함)
부동산 미소유시 (두가지)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	관할 관공서 (시·군·구청 및 인터넷 정부24)
	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		관할 관공서 (시·군·구청 및 인터넷 '내 토지 찾기')
주민등록등본(전부 표기)		동일세대원 내 현물보상대상자 유무여부	주민센터
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전부표기)		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	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			
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		서류 제출 대리 여부 (군복부 또는 병원입원 등)	LH 홈페이지
※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,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, 주소이력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.			
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, 당사자가 복합지구 내 재산세(주택,토지 등)를 납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.			
※ 신청자(양수·양도인)가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유권해석 검토 후 접수 여부 판단			
※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,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
□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

(앞면)

현물보상 지위승계 표준 특약서

토지등소유자(양도인) _____과 양수인 _____은 다음의 물건에 대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특약을 체결한다.

[특약사항]

- 양도인은 매매하는 토지등 외 물건 또는 잔여 소유지분에 대하여, 양수인 외 타인에게 **현물보상 지위 승계를 특약하는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받는다.**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,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.
- 거래 당사자는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10제7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. 양도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, 양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.
- 양도인은 본 특약 체결 후 양수인에게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10제7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.
-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의하여, 계약체결(잔금납부 완료) 후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이전 완료한다. 단, 특약 확인 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본 특약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을 신청한다.

※ 위 사항 외 거래당사자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약사항 추가 가능

양도인	성명	(인)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소					
양수인	성명	(인)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소					

(뒷면 계속)

<대상 리스트>

대상 물건	소유권 이전	구분	보상물건	소재지/지번
		1	주택	
		2	토지	
		3	주택외	
		4	*****	
		5	*****	
	현금보상	1	주택	
		2	토지	
		3	주택외	
		4	*****	
		5	*****	

< 확 인 란 >

해당 특약은 현물보상 도심복합사업지구 내 토지등을 거래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특약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였습니다.	법무법인	LH

☐ 현물보상 지위 승계확인 신청서

(앞면)

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신청서							
신청인 정보	양도인	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		주소					
	양수인	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		주소					
대상	주택(), 주택 외 건축물(), 토지()						
현물 보상 대상 세부 내역	구 분	보상물건	소재지/지번				
	1	토지					
	2	주택					
	3	주택 외					
	4						
	5						
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-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신청하는 거래 이전 당사자들의 자격요건 및 현물보상 대상 물건 확인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- 양도인·양수인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양도인 소유 물건(토지등)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.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,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양도인 : _____(인) 양수인 : _____(인) ■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-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-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.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,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☐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양도인 : _____(인) 양수인 : _____(인)							

(뒷면 계속)

< 유의사항 >

1.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, 양도인 내지 양수인의 현물보상 지위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 뿐만이 아니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등 관련법령에 정해진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2.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LH) 및 법무법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, 현물보상 신청 및 심사 시 무주택자 요건 등 확인 외의 사항에 대해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10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경우,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내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3.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(LH)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은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15일 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이 중단된 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4. 공공주택사업자(LH)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위변조되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, 공공주택사업자(LH)의 확인은 효력이 없으며,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(LH) 및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5. 공공주택사업자(LH) 및 법무법인에게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할 당시의 내용과 확인 이후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, 등기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6.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LH)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그 확인 당시 시점의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에 기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, 공공주택사업자(LH)의 확인 후 변동이 발생하여 현물보상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7. 본 신청서의 내용 내지 특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8. 그 외 지위 승계 확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LH 및 해당 사업지구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지위승계 특약
확인결과 회신**

등기우편 수령 주소: _____

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: _____(인)